

大田直轄市障礙人乘用自動車에 對한 自動車稅  
課稅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 審 查 報 告 書

1991. 12. 27.

內 務 委 員 會

## 目 次

1. 審 查 經 過 ..... 2
2. 提案說明要旨 ..... 2
3. 專門委員 檢討 要旨 ..... 3
4. 質疑 與 答辯 要旨 ..... 4
5. 討 論 要 旨 ..... 4
6. 審 查 結 果 ..... 4

大田直轄市障礙人乗用自動車에 對한 自動車稅  
課稅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 審 查 報 告

1991年 12月 27日  
內 務 委 員 會

###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1年 12月 18日, 大田直轄市長
- 나. 回 附 日 字 : 1991年 12月 19日
- 다. 上 程 日 字 : 第7回 大田直轄市 議會 (定期會)  
第6次 內務委員會(1991. 12. 23)  
上程, 審議, 議決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者 : 財務局長)

#### 가. 提案理由

- 障礙人들의 福祉增進과 社會活動을 支援하기 위하여 障礙人의 福祉法의 規定에 의한 1級 내지 3級에 該當하는 肢體不自由 障礙人으로서
- 運轉 免許를 取得하여 1500 cc 以下の 보철용 乗用 自動車를 本人 名義로 登錄하여 使用하는 경우에 自動車稅를 課稅免除 하였으나,

- 課稅免除 其間이 '91年末로 滿了됨에 따라 適用時限을 延長하여 一定其間 課稅 免除하고자 함.

#### 나. 主要骨子

- 適用時限을 延長하고자 함 (附則 第 ②項)
  - 從前에는 適用時限을 1991年 12月 31日 까지로 하였으나, 1994年 12月 31日 까지로 延長하고자 함.

### 3. 專門委員 檢討 要旨(專門委員 安鍾贊)

- 本 改正條例案은 障礙人들의 福祉增進과 社會活動을 支援하기 위하여 障礙人 福祉法의 規定에 의한 肢體不自由 障礙人으로서 1500cc 以下の 보철용 兼用 自動車를 直接 使用하는 경우에는 自動車稅 課稅免除 條例가 '91年末로 時限滿了됨에 따라
- 時限을 延長하여 地方稅法 第 9條의 規定에 의거 '91. 11 . 21. 內務 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事案으로서
- 改正內容은 條例의 適用時限을 1994年 12月 31 日 까지 延長하려는 事案임 (附則 第 ②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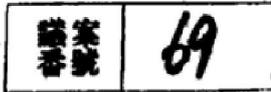
本 案은 障 碍 人 福 祉 法 第 5 條 및 第 16 條의 規 定에 依 하 여 現 行 條 例 第 2 條에 障 碍 人 乘 用 自 動 車에 對 한 自 動 車 稅 課 稅 免 除 規 定을 두 어 이 들의 活 動을 支 援 한 바, 이는 障 碍 人 들의 自 立 意 志와 日 常 的인 生 活에 많 은 도 움이 되 리 라 期 待 되 어 條 例 制 定 趣 旨에 妥 當 하 므 로 肯 定 的인 檢 討가 必 要 한 것 으 로 思 料 됨.

4. 質 疑 및 答 辯 要 旨 : 省 略

5. 討 論 要 旨 : 省 略

6. 審 查 結 果 : 原 案 可 決

大田直轄市 障害人 乗用自動車에 對한 自動車稅 課稅免除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



1991. 12. 16.

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 가. 障碍人들의 福祉增進과 社會活動을 支援하기 위하여 障碍人 福祉法의 規定에 의한 1級 내지 3급에 該當하는 肢體不自由 障碍人으로서
- 나. 運轉 免許를 取得하여 1500cc 以下の 보철용 乗用 自動車를 本人 名義로 登錄하여 使用하는 경우에 自動車稅를 課稅免除 하였으나
- 다. 課稅免除 期間이 '91年末로 滿了됨에 따라 適用時限을 延長하여 一定期間 課稅 免除하고자 함.

2. 主要骨子

- 適用時限을 延長하고자 함 (附則 第 ②項)
  - 從前에는 適用時限을 1991年 12月 31 日까지로 하였으나, 1994年 12月 31 日 까지로 延長하고자 함.



- 地方稅法
  - 第 7條 (公益 等 事由로 인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 ① 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인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第 9條 (課稅免除等を 위한 條例) 第 7條 및 第 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 · 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定하여야 한다.
- 條例改正許可 : '91. 11. 21 (內務部長官)
- 立法豫告
  - 期 間 : '91. 11. 23 ~ '91. 12. 12. (20日間)
  - 方 法 : 揭示公告 및 市公報掲載 ( '91. 11. 28 第 74 號)
  - 結 果 : 意見 없음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 대전직할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 칙 (조례 제 1969 호)</p> <p>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1991년 12월 31일까지</u> 시행한다.</p>	<p>부 칙 (조례 제1969호)</p> <p>② (적용시한) ----- ----- <u>1994년 12월 31일까지</u> ----- -----</p>